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학생은 학부 및 대학원생 등 본 대학교내 모든 학생을 칭한다.(개정 2015.05.26)

**제2조(상벌의 기구)** ① 학생의 포상과 징계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앞서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단과대학 교수회의 또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8.08.23.)

## 제 2 장 학생상벌위원회

**제3조(설치)** 본 대학교에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한다.

③ 위원은 교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상벌대상인 학생의 소속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15.05.26)

**제5조(소집과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 2일 전에 징계 심의대상이 된 학생에게 징계심의회에 회부된 사실 및 출석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5-4~2 제3편 행 정

**제6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권한을 가진다.

1. 학생의 포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3.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기타 학생의 포상, 징계 또는 학생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가 관리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제 3 장 포 상

**제9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① 학생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학업상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로상 :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3. 문화상 : 우수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본 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4. 모범상 : 선행을 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된 자
5. 자랑스러운 가천인상 및 가천인재상 : 대내외 활동으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 (개정 2017.08.29.)

② 위 1 ~ 5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5.26)

**제10조(기타의 포상)**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에 정한 포상 이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 4 장 징 계

**제11조(징계의 종류)** ①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의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08.30.)

② 제1항에 정한 근신은 7일 이내, 유기정학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근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한 자
  - 가.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한 자(신설 2013.03.01)
  - 나. 교수연구나 행정사무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 다. 교내의 환경을 고의로 더럽히거나 풍기를 문란케 한 자

- 라. 교내의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자
  - 마. 과실로 학교의 시설 또는 물품을 파괴한 자
  - 바. 온라인을 통한 학우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자 (신설 2014.11.18.)
  - 사. 성희롱을 한 자(신설 2018.02.22.)
- 2. 교직원에게 심히 불손한 행위를 한 자
  - 3. 교내의 학교 게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 등(개정 2016.08.30.)

**제13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 1.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자
- 2. 학우를 협박 또는 폭행한 자
- 3.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 4. 수업을 방해할 만한 현저한 행위를 한 자
- 5. 고의로 학교의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하거나 이를 허가없이 반출한 자
- 6. 근신처분을 받은 후 제12조에 정한 행위를 재범한 자 등(개정 2016.08.30.)
- 7. 경미한 성추행을 한 자(신설 2018.02.22.)

**제14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 1. 학우를 집단폭행한 자
- 2. 교직원 등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자
- 3. 광고물, 인쇄물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 4. 온라인(SNS)을 통한 학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자 (신설 2014.11.18.)
- 5. 유기정학을 받은 후 제13조에 정한 행위를 재범한 자 등(개정 2016.08.30.)
- 6. 심한 성추행을 한 자(신설 2018.02.22.)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 1.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를 할 목적으로 조직을 하거나 선동한 자
- 2.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 3. 성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 4. 집단으로 학교의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한 자
- 5. 교직원을 폭행한 자
- 6. 형사처벌을 받은자(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
- 7. 대리시험을 보게 한 자
- 8. 무기정학을 받은 후 제14조의 행위를 재범한 자 등(개정 2016.08.30.)
- 9. 성폭행을 한 자(신설 2018.02.22.)

**제16조(권리의 정지 또는 상실)**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학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정학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

### 3-5-4~4 제3편 행 정

지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17조**(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인 자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가 개선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통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하고 징계처분통지서(별지서식 제1호 : 신설)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05.26.)

#### 보 칙

**제1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신설 2015.05.26.)

## 징계처분통지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                      성명 :

위의 학생은 20    학년도 제    학기에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을  
받았기에 통지합니다

다                      음

1. 징    계    사    유 :
2. 징    계    내    용 :
3. 징계처리일자 :

20    .    .    .

가 천 대 학 교 학 생 상 별 위 원 장    (인)

귀하